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03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성원 · 박성훈 · 안철수
김은혜 · 이현승 · 김선교
고동진 · 박충권 · 김정재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되고 있어 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u> <u>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u> <u> 른」 제3조제1호부터 제3</u> <u> 호까지 규정에 따른 특수</u> <u> 임무사망자와 행방불명자</u> <u> 또는 특수임무부상자 또는</u> <u> 특수임무공로자로서 사망</u> <u> 한 사람</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